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가단201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혁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4. 4. 접수 제39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B는 2018. 8. 9. C에게 남양주시 D 등 4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18. 9. 19. E에게 인천 남동구 F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B에 대하여 231,109,860원의 양도소득세채권을 갖게 되었다.

(2) B는 2018. 10.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4. 4. 접수 제39007호)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고, 위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2018. 9. 10.이고, 달리 위 일자와 다른 날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8. 9. 10.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1. 3.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별지